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	출	자	민병춘 의원 등 4명	
제출연윌일			2023. 11. 15.	

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제208 호

발의연월일: 2023. 11. 15.

대표발의자 : 민병춘

공동발의자 : 이상구, 장진호

윤금숙

1. 제안이유

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논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제5조)
- 다.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(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

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「근로기준법」제11조

나. 조례안예고 : 2023. 11. 15. ~ 11. 19.(5일간)

□ 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경력단절 여성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 - 나.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- 2. "경제활동 촉진"이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교육기관·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- 3. "경력단절 예방"이란 여성이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 구성원

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
- 4.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여성고용업종"이란 「근로기준법」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논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논산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.
- 제4조(사용자의 책무)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행계획 등) ① 시장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논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"시 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 사업 등)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 · 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
 - 2.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
 - 3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
 - 4.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
 - 5.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
 - 6.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·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업
 - 7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

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시장 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	소 관 부 서	성	뗭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민병춘 의	원 등 4명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경력단절여성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 - 나.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 - 2. "경제활동 촉진"이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교육기관·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.
 - 3. "경력단절 예방"이란 여성이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 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

- 제5조(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 이라 한다)를 세워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
 - 2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
 - 3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
 - 4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때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 이라 한다)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·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7조(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 단체·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·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여성경제활동백서)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임금, 직종, 고용형태,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

제10조(일자리창출 지원 등)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, 경력,

-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
-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구인·국직 정보의 수집 등)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(求人)·구직(求職)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·구직의 개척에 노력 하여야 하며, 관련 정보를 구직자·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 하여야 하다.
- 제12조(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)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직업교육훈련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4조(일경험 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.
 - 1.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
 - 2.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· 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
 - 3.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
 - 4.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 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

- 제16조(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 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 제활동지원센터(이하 "중앙지원센터"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,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 - 2.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 · 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
 - 3. 취업・창업지원 등의 상담,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・보급
 - 4.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
 - 5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, 기업 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 - 6.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
 - 7.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

- 8.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단 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혼인·임신·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,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
 - 2.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교육,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
 - 3. 취업·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
 - 4. 직업교육훈련, 취업알선 및 휘업 후 직장적응 지원
 - 5.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
 - 6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, 기업 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 - 7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지정취소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

- 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
- 4.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
-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

제5장 보칙

- 제19조(보고·검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20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 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1조(관계 기관의 협조)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

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.

□「근로기준법」

- 제11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 -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